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g

안전작업허가 지침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 / 16

1. 목적

이 지침은 지역사무소 시설물에서 실시하는 작업(업무) 시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추락, 감전 등 발생가능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작업 허가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역사무소가 지배·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유지보수, 관리 등의 모든 업무(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유해위험작업

중대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으로서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작업,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화기작업을 말한다.

3.2 일반작업

3.1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3 밀폐공간작업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4 정전작업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으로부터 감전 또는 설비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5 굴착작업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을 굴착하는 작업을 말한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2 / 16

3.6 방사선작업

전자파나 일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을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이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3.7 고소작업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해하는 작업을 말한다.

3.8 중장비 사용작업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9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3.10 가연성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6. 부식성 물질과 7. 급성 독성 물질을 제외한 물질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가연성분진,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사장)

지역사무소 안전작업허가서의 승인

4.2 안전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한 관리감독자)

- 1)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및 발급
-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관리 및 감독
- 3)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입회 및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3 수급업체 대표(작업 관계자를 포함한다), 근로자

안전작업허가 지침 준수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3 / 16

5. 일반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직원(근로자): 단독업무 금지
- 2) 관계법령에서 단독업무를 금지하는 업무: 2인 1조 업무 수행
- 3) 해당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의 업무, 중 장비 사용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작업지휘자 지정을 요구하는 업무: 작업지 휘자 지정

6.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일반사항

6.1 안전작업허가의 대상 작업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은 3.1 유해위험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으로 한다.

6.2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발급, 승인 및 입회

- 1)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팀장은 안전작업허가서(이하 "작업허가서"라 한다, 양식 지사KoELSA-SG-10_01)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안전작업허가는 일 단위로 발급한다. 다만, 동일한 작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기간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 3)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안전팀장은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 등에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 게시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등을 알려야 한다.
- 5) 작업이 최초 허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을 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안전 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업허가 연장을 하여야 한다.
-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팀장은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 대표와 작업 관계자(이하 "수급업체 관계자"라 한다) 등은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6.3 책임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4 / 16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 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 2) 안전팀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등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 3) 수급업체 대표자는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4)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작업 중 작업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6.4 작업허가서의 보존

- 1) 작업허가서는 해당 지역사무소에서 보존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보존 할 수 있다.
- 2) 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6.5 작업허가서의 효력 등

- 1) 작업허가서의 효력은 작업허가서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된다. 다만, 작업자 및 작업허가서 발급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작업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 2)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급업체 관계자는 안전팀장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안전팀장은 작업허가서를 재 발급 하여야 한다.
- 3) 수급업체 관계자는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허가서 발급내용에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개시 사실을 안전팀장에게 알려야 한다.

7. 안전작업 준비 및 이행상황 점검

7.1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팀장은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아래 사항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수행 작업이 밀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5 / 16

- 2) 수행 작업에 안전상 정전(전기차단)이 필요한지의 여부
- 3) 수행 작업이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의 여부
- 4) 점검 또는 정비, 검사에 방사선사용 작업이 수행되는지의 여부
- 5)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6)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처리방법 및 세정방법의 적정성
- 7)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 8)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내부포켓 또는 드레인 등)상 유해·위험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 9)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 필요성
- 10)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계획
- 11) 출입 제한구역 계획
- 12) 작업중 현장 입회자를 두어야 할지의 여부
- 13)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망예방대책
- 14) 중장비 작업과 관련한 사고예방대책

7.2 작업 전 조치사항

- 1)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허가서상의 공정 또는 운전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 2) 작업허가서상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등의 준비 확인
- 3)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특수 작업절차서의 작성
-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확인
- 5)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 추가 실시

7.3 작업 중 조치사항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팀장 또는 관계직원은 안전작업 허가를 승인받은 작업의 수행 중에 수시로 작업허가서 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2) 수급업체 관계자는 작업 중에 기상상황, 작업조건 변경 등 갑작스러운 이상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팀장에게 통보한다.

7.4 작업 후 조치사항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6 / 16

- 1) 수급업체 관계자는 안전작업 허가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리정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상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수급업체 관계자는 안전작업 허가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팀장에게 알려야 한다.

8. 유해위험작업별 안전작업허가 세부사항

8.1 화기작업 허가

- ① 화기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통행 및 출입을 제한한다.
- ②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자는 소화기 위치 등을 파악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화재감시자는 산업안전, 소방, 위험물관리 등의 자격취득자 또는 교육이수자로 배치
- ③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 구역 내에서 가연성물질 및 독성 등 유해물질의 가스농 도를 측정하고, 가연성물질의 잔유여부를 확인한다.
- ④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내의 출입을 통제한다.
- ⑤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설치 표지를 부착하여 실수로 작동시키거나 제거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배관 또는 용기 등에 인접하여 화기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배관 및 용기내의 위험 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가연성물질의 잔류여부를 확 인한다.
- ⑦ 밀폐공간에서의 직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 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를 하여야 한다.
- ⑧ 화기작업 중 용접불티 등이 인접 인화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 차단막 또는 불받이포를 설치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을 밀폐한다.
- ⑨ 화기작업 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 중 주기적인 가스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⑩ 필요한 경우 화기작업 전에 비산불티 차단막,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화기 작업 현장에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를 대기시켜야 한다.

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7 / 16

8.2 밀폐공간출입 허가

- 1) 밀폐용기의 개방 시 안전보건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온 또는 고압 하에서 운전되었던 밀폐용기에서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압력을 방출시키거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② 공정물질을 제거하고 질소와 공기로 치환하여야 한다. 특히, 용기 내부의 포켓 부분 및 드레인 라인 등에 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을 완전히 방출시켜야 한다.
 - ③ 배관을 격리하거나 밸브의 이중 잠금 또는 맹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 잠금 또는 맹판설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기기내의 모든 작동부분은 전기 또는 기계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 ④ 운전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작업자에게 개방대상용기와 공정물질의 물질안전보건 자료, 내재된 위험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용기 내에 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에 작업자가 폭로되지 않도록 안전장구 및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이하 "가연성 물질"이라 한다.), 독성물질 취급용기를 개방할 때는 별도의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입회자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밀폐공간 출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작업자의 출입에 앞서 용기내부 및 공정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압력계, 시료채취점 등)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한다. 세척작업 시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완전히 치환한다.
 - ②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 등의 가스농도 측정 : 용기내부를 세척한 후에는 용기 내에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 등의 가스의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허가서에 기록한다.
 - ③ 용기내부를 세척한 후 산소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서에 기록하고 산소농도가 18%이상 23.5%미만일 때 용기내의 출입을 허가 한다.
 - ④ 체류가스와 산소농도의 측정은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일정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8 / 16

- 3) 용기내의 공기질 측정결과가 안전한 상태(산소농도 18%이상 23.5%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미만, 황화수소농도 10ppm미만)로 확인될 때까지 용기 내에 출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밀폐공간 내 작업시에는 다음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작업자는 구명밧줄(Life line)을 착용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명선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구조용 기구가 비치되어야 한다.
 - ③ 작업입회자는 밀폐공간 출입 시 반드시 입회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 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용기의 외부에 안전대기조(2인 1조)를 대기하도록 조치한다.
 - ④ 작업입회자는 안전대기 또는 구명선의 이상 유무 확인, 작업자와의 통신 및 비상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휴대한다.
 - ⑤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강제환기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계속적인 강제환기를 통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 한다.
 - ⑥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방폭등을 사용한다.
 - ⑦ 인화성 물질 등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 구를 사용 한다.
 - ⑧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8.3 정전작업 허가

- 1) 정전작업 허가 시에는 다음과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정전작업 허가 시에는 사전에 전기단선도에 따라 차단하여야 할 스위치를 확인한다.
 - ② 허가서에 차단하여야 할 기기 번호와 이름을 기재한다.
- 2)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전작업 계획서(양식4)를 작성하여 정전작업을 실시하는 날마다 확인한다.
 - ② 도급사업의 경우 정전작업 계획서는 수급업체 관계자가 정전작업을 실시하는 날마다 작성하여 공단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작업이 완료되는 날마다 공단에제출한다. 이 경우 점검결과는 공단과 수급업체 관계자가 함께 확인한다.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9 / 16

- ③ 잠금장치의 열쇠는 공단 관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본 계획서는 수정이 가능하나, 10~22과 40~66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4 굴착작업 허가

- 1) 굴착작업 허가 시에는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하고,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장하는 부서로부터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굴착작업 허가에 도면을 첨부한다.
- 2) 굴착작업 시의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또는 접지선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한다.
 - ② 그 밖에 굴착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사항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8.5 방사선사용작업 허가

- 1) 방사선사용작업 허가 시 방사선 방사위치를 포함하여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한다.
- 2) 방사선 사용시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방사선사용작업은 자격이 있는 작업자에 의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작업지역 주위에는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를 게시하고 통행 및 출입을 제한한다.
 - ③ 출입제한 표지에는 방사선 위험표지 및 점멸등을 설치한다.
 - ④ 작업이 완료되면 방사선 물질을 즉시 안전하게 수거한다.

8.6 고소작업 허가

- 1) 고소작업 시의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필요한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설치 및 사용안전지침 (KOSHA CODE C-08-2015) 을 준용하여 비계 및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 ②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일정간격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8.7 중장비사용작업 허가

1) 중장비사용작업 시의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0 / 16

- ① 해당 중장비는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 ② 시야간섭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한다.
- ③ 연약지반이나 협소공간에서의 작업은 금지한다.
- ④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를 유지한다.
- ⑤ 차량운반구를 적상 또는 적하시 운전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 ⑥ 장비의 부속 및 부품, 물체를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을 사용한다.
- ⑦ 중장비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투입 전에 본부 안전관리팀과 상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요청 및 이행확인서 등 징구

- 1) 지사에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급인에게 안전관리요청 및 이행확인서(양식2)와 위험성평가 결과 등 이행결과서(양식3)를 징구하고 실제 도급사업 작업 시작 전까지 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10.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 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기상악화, 작업조건의 변경 등 갑작스러운 이상상황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 관계자는 비상사태(이상상황) 대비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2) 갑작스러운 이상상황 발생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팀장이 실시하는 작업재개 조치 이후에 작업에 복귀하여야 한다.
- 3) 안전작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절차를 해당 직원 또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1. 보충적인 조치사항

- 1) 지역사무소가이 지배·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임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유지관리 등의 작업에도 본 지침을 적용한다.
- 2) 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소, 단순 시설관리 등 업무분장으로 부여된 임직원의 업무와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업무 등은 안전작업 허가 대상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1 / 16

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관련 문서

- 1) 안전작업허가서(양식1)
- 2) 안전관리요청 및 이행확인서(양식2)
- 3) 위험성평가 결과 등 이행결과서(양식3)
- 4) 정전작업 계획서(양식4)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2 / 16

[양식1]

안전작업허가서																		
허가번	호	:					허	가일	자 :									
신 청	인	: 부	서			직책				성망	₫			(서 명	3)			
작업하	가	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Y	시 까지		
작업장			장치								장치	번호	:					
설비(7			작업	지역(장	당소) :													
작업																		
첨부						기목록			수작업		∤서 □				막업절			유 □무
서류	기술	울자.	료(도		-	장구 목록		<u> </u>	착도면				경가			작업싱	:ol 🗆	유 □무
						요구사학	1							- <u> </u>	_			
				J금지 					용기개		Ų 압력 ∷_:-				조명			
				질 제:	거				용기내						소화	.		
가스농			-						불활성				환기		안전			
					착(도면		·····		비산불		단막 ′	설지			안전.			
				부착(도					환기징							요원 [
위험물	·질(가연			-	및 처리			화재감								은 필수	는 배치
						허가서								확인은	Ø I	<u> </u>		
밀폐공	급간		ᇰ	신수단 노ㄷ ᅔ	□ ○ / ≤저경기	구명장구 : HC 0%	(全, 名	즐기□ 19% 0	ㅏ스크) ╽사 ←) / 허기 nnmⅡ	가기간 마 C	: :	ᅂᄱᄜ		확인자		(서명)
			ᇰᄎᆘ	타기기	• 제어식	1					.) ?	<u> 단언</u> 혀	장(미리)	١
			o제	다. 어실 : :	스위치,	차단기 내 차단기 내	림 □	0 /	/ 잠금 [:]	장치	시건, 3	Ĕᅬᅣ	참 [0/5	허가기	간 :	~	,
정	전		ㅇ현	~장::	스윔칟,	차단기 내	릴묘	ي ي	/ 잠금	장치	시건,	ᄄᄭ부	·착 [우인	ᆚ잒	0 ± 1	_{-,} (서명)
			- 선 ※ 저	원폭구 워보구	: 모든 : 요청지	작업이 온 :	[됴핀	우 여	거가요? 구시간	경우시	의 표선	ଅଜା -	의애/ 호 /	이만 선원 사인자	!글 푹	구아먹	아 안!	-1.
	* L	_				<u>'</u> 소방배관							, -	1 - 1				
굴	착	Ш	o설	비 : 전	기,계장,등	통신		/ 점	검자			가기긴		~		확인자		(서명)
방 사	선		o 비	인가자	출입제한		′ 방사	선 우	l험경고	1, 표7	ן □ (י י י) / X	다격증			たい エレ		(IJ EH)
						면 첨부 [간 □ ○ .		111 7	나요.ㅂ:	ᡮ □		가기긴 츠라비		- 0		확인자		(서명)
고	소			ㅂㄹ근,	וטטיט		/ 22	: - II -	10'T	⊣ ⊔	어 / 너	ㅜㅋㅎ 가기?	아이 간 :		:	확인자		(서명)
			ㅇ투'	입장비	: () / 자	격증 :	소지				- D C)
중 장	비		ㅇ깃	상, 노면	년상태 □	│	선, 설	비 긴	<u>'</u> 섭 □	0 /								
71 4		므지		전원 🧵	i at	춰ᆡ	71		저다			가기?		~ 4 JL		<u>확인자</u>		<u>(서명)</u> 5 저 지
가스 농도		물질	70'	Ē	과	측정시	긴		정자	+	물질명	5	Ē	불과	76	성시간	-	투정자
ㅎェ 측정																		
기타	트	벽사	항		가요구	· 안전조치	이으	: (벽 7	디 작성	1)		 l	'l Ω -	구 안전	 5	선은		
		<u></u> 라료			<u>'ㅡ</u> '서 책임			1 (= '			입회자		<u>' </u>	<u> </u>	<u>- ' ' ' '</u> (서명)			
안전	_		인						<u> </u>	<u> </u>	<u>- · · · </u>				(10	<u>, </u>		
 발급:		<u></u> 부			직책	,	 성명		(,	 서명)	관련	부서	협2	· 자				
승인:		부	•						•		부사	1		직책		성명		(서명)
				- 1-	직책 		성명 			서명) 이	부서		n: -	<u> 직책</u>	I T I	성명	,,11	<u>(서명)</u>
작업	어 7	<u>면</u>	장	년	월	일 시	부터	1	년	월	일	시_	까지	/ 발급	사		(서	8)



0

9. 안전작업 허가 지침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3 / 16

추가요구 안전조치(예시)	
1. 해당 작업 담당부서 및 수급업체	
□ 작업 전 조치	
o 고소작업차 사용 시에는 안전난간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 작업 중 조치(공단·수급업체 공동 순회점검)

ㅇ 다음의 계획에 따라 작업 중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지정시각	점검내용	점검결과
11:30	점심식사 전 정리정돈	□ 양호 ■ 미흡 (전선줄 정리정돈 개선)

o 공동 순회점검 참석자 확인

소속	성명	서명철				

□ 작업	후	조지
------	---	----

0

2. 수급업체

- □ 안전관리요청 및 이행확인서(양식2) 제출: 작업 시작 전 제출
- □ 위험성평가 이행결과(양식3) 제출: 작업 시작 전 또는 공단 요구 시 제출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4 / 16

[양식2]

○○○○작업 안전관리요청 및 이행확인서(예시)

- ㅇ 대표자는 모든 작업에 있어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작업자에게 <u>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등)</u> 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o 대표자는 기상악화 등 작업환경 변화로 <u>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u>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공단 관계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o 대표자는 <u>정부 및 공단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감염 방역지침을 준</u> 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구 등 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 관계자와 사전에 혐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는 <u>위험성평가 이행결과를 최초 작업일 전에 공단 관계자에게</u> <u>제출</u>하여야 합니다.
 - ※ 작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

2023. . .

공단의 안전관리요청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요청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5 / 16

[양식3]

〇〇〇〇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등	이행결과서(예시)
--------	-------	------	-----------

제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귀사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상의 필수사항인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최초 작업시간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결과(개선대책이 없는 경우 미작성)

ल मा	0 케이팅 0 이	현재	위	험수	준	개선대책	പ്ചിറി	
연번	유해위험요인	안전관리현황	상 중		하	이행결과	이행일	

- 2.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붙임〉
- 3.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대장을 작성

보호구 지급대장									
본인은 아래와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필요한 작업 수행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서대		지	급 보호구 종	류		지급일	IJ FH		
성명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서명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6 / 16

<붙임>								
안전교육 참석자 서명철								
□ (일시・장소)								
□ (교육강사)								
□ (교육내용)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안전교-	육 사진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09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2
페이지	17 / 16

[양식4]

정전작업 계획서(해당하는 경우 작성)						
업체명		직위		성명	(인)	

ロス	·업일시:	녆	위	<u>o</u>]	00:00 ~	- 00.00
114	[업물기].	57	73	=	ω	~ \\\\.\\\\

시간	작업내용 및 절차	점검결과
	❶ 정전작업 절차 논의 및 LOTO 사용법 등 교육	□ 양호 □ 미흡 (미흡사항 조치내용:)
	❷ 분전반 메인 전원 OFF, 잠금 및 안전표지 부착 조치	□ 양호 □ 미흡 (미흡사항 조치내용:)
	❸ 전기공사 등 실시	_
	◆ 작업완료 시 근로자 위치확인 등 확인	□ 양호 □ 미흡 (미흡사항 조치내용:)
	6 잠금 조치 해제 및 전원 ON ※ 해당 일에 잠금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양호 □ 미흡 (미흡사항 조치내용:)

※ 유의사항

- 1. 정전작업 계획서는 수급업체 관계자가 정전작업을 실시하는 날마다 작성하여 공단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작업이 완료되는 날마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점검결과는 공단과 수급업체 관계자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잠금장치의 열쇠는 공단 관계자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 4. 본 계획서는 수정이 가능하나, 1~2과 4~5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